

우즈베키스탄(Uzbekistan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
- 현행법 : 1993년(국가연금), 2004년(의무개인계좌), 2007년 시행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, 의무개인계좌, 사회부조제도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: 고용된 우즈베키스탄인
- 의무개인계좌 : 고용된 우즈베키스탄인
 - 임의적용 : 자영자, 특정부류의 근로자
- 사회부조 : 빈곤한 우즈베키스탄인
 - 특별제도 : 군인과 참전용사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소득의 8%
 - 의무개인계좌 : 소득의 2%. 추가납부 가능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 : 최소 월 최저임금; 60세 이상의 남성, 55세 이상의 여성, 또는 장애인일 시 최소 월 최저임금의 50%
 - 월 최저임금은 202,730 soms임(2018년 11월)
 - 자영자 보험료는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
 - 의무개인계좌 : 신고소득의 2%. 추가납부 가능
 - 사회부조 : 없음
- 사용자
 - 사회보험 : 총 급여지급액의 25%; 소규모 및 영세 기업체는 15%
 - 사용자 납입 보험료는 질병급여, 출산급여, 산재급여, 실업급여,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

- 의무개인계좌 : 없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 : 필요한 만큼 보조금 지급
- 의무개인계좌 : 없음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보험적용 근로기간 25년 이상의 60세 남성 또는 20년 이상의 55세 여성
 - 위험하거나 힘든 직종에서 근로하는 자, 환경훼손지역에서 근로하는 자, 고령 실업자, 재직기간 25년 이상의 교사, 다른 범주의 근로자 등에게는 수급요건 완화됨
 - 근로는 중지되어야 함
 - 연기연금 : 연금이 연기될 수 있음
 - 노령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송금이 가능함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 : 60세 남성 또는 55세 여성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보험적용 근로기간 25년 미만의 60세 남성 또는 20년 미만의 55세 여성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장애가 시작된 나이에 따라 보험적용 근로기간 최소 2~20년 이상, 그룹 I(완전장애로 어떤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고 상시간병을 요하는 상태) 또는 그룹 II(완전장애로 어떤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으나 상시간병은 요하지 않는 상태)로 판정
 - 부분연금 : 완전한 장애연금의 가입기간요건 충족하지 않아야 함
 - 연금보조금 : 보험적용 근로기간 최소 25년 이상(남성) 또는 20년 이상(여성)의 그룹 I 장애인에게 보조금 지급
 - 의학위원회 전문가가 장애등급 결정
 - 장애연금 해외지급 불가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어렸을 때 발생한 장애를 보유한 그룹 I 또는 그룹 II 장애인인 빈곤한 어른 또는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사망 시 나이에 근거하여 최소 2~20년의 보험적용 근로기간을 가진 경우 지급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피부양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와 근로하지 않는 피부양자(배우자; 장애인이며 연금수급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양쪽 부모; 어떤 다른 형태의 지원이 불가능한

조부모)를 포함

- 유족연금은 해외지급 불가
- 유족급여(의무개인계좌) :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가입자 사망 시 지급
- 고아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16세 미만의 빈곤한 고아에게 지급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을 시 제한 없음)
- 장제비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장례식을 지불하는 자에게 지급. 사망자가 보험가입자, 연금수급자, 또는 피부양 가족 구성원이어야 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가입자의 소득등급에 연금액이 근거함 : 지난 10년 중 연속 5년간의(임의선택가능)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5% 중.고소득 가입자에게 지급;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월 최저 노령연금액 지급
 - 월 소득이 월 최저 노령연금보다 낮다면 저소득 가입자, 월 최저 노령연금 이상 월 최저임금의 8배 미만일 경우 중소득 가입자, 월 최저임금의 8배 이상일 경우 고소득 가입자로 분류
 - 월 최저 노령연금액은 396,500 soms(2018년 11월)
 - 월 최저 임금액은 202,730 soms(2018년 11월)
 - 연기연금 : 일반퇴직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1년 당 지난 10년 중 연속 5년간의(임의선택가능) 가입자 월 평균수입의 1%이 중.고소득 가입자에게 지급됨; 초과 근무 1년 당 월 최저 노령연금의 1%가 저소득 가입자에게 지급
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은 월 최저임금의 8배
 -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이민을 간다면, 연금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의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 : 급여는 <총 근로자 보험료 납부액 + 경과이자>에 근거하며 월 급여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
 - 이자율은 인민은행이 중앙은행과 재무부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하며,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됨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243,300 soms 지급(2018년 11월)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25년(남성) 또는 20년(여성) 미만의 보험적용 근로기간을 가진 그룹I 장애인에게, 지난 10년 중 연속 5년간의(임의선택가능) 가입자 월 평균 수입의 55%가 지급됨; 25년(남성) 또는 20년(여성) 미만의 보험적용 근로기간을 가진 자에게 고소득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100% 지급
 - 보험적용 근로기간 25년(남성) 또는 20년(여성) 미만의 그룹II 장애인에게, 지난 10년

- 중 연속 5년간의(임의선택가능) 가입자 월 평균 수입의 55%가 지급됨; 보험적용 근로기간 25년(남성) 또는 20년(여성) 미만일 경우 고소득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100% 지급
- 최저 장애연금액은 월 최저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100%
- 월 최저 사회보험 노령연금액은 396,500 soms(2018년 11월)
- 부분연금 : 전체 장애연금의 일정 %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년 미만의 보험적용 근로기간 년도 수에 근거하여 지급
- 연금 보조금 : 보조금 지급
- 장애연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이민할 시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최저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100% 지급
- 월 최저 사회보험 노령연금액은 396,505 soms(2018년 11월)
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지난 10년 중 연속 5년간의(임의선택가능)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30%가 각각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
- 최저 유족연금액은 월 최저임금의 50%임; 부모 모두 또는 홀어머니의 사망 시 월 최저임금의 100%
- 월 최저임금은 202,730 soms(2018년 11월)
- 유족연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이민할 시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
- 유족급여(의무개인계좌) : <총 근로자 보험료 납부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고아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부모가 정부보조를 받고 있던 경우 월 최저임금의 50% 고아에게 지급; 부모가 정부 보조를 받고 있지 않았던 고아에게 100% 지급
- 월 최저임금은 202,730 soms(2018년 11월)
- 장제비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연금 수급자 사망 시, 수급자가 지급받았던 월 연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; 사망자가 연금가입자가 아니었거나 피부양가족 구성원이었던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의 3배 금액 지급
- 월 최저임금은 202,730 soms(2018년 11월)
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

7 **관리운영기관**

-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
 - 전반적인 조율 및 감독
 - <https://www.mf.uz/>

- 재무부 산하의 비예산 연금기금(Extrabudgetary Pension Fund)
 - 제도의 관리운영
 - <https://www.mf.uz>

- 조세당국이 보험료 징수함

<2018년 ISSA 자료>